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1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조계원·김현정·양부남

이광희 • 민병덕 • 주철현

허 영・김문수・윤준병

임오경 · 김우영 · 허종식

문금주 • 박해철 • 허성무

권향엽 • 이재관 • 박지원

황 희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,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,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,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

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및 제8조).

법률 제 호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부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의2.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
	권 신장에 관한 사항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관광 여건의 조성) (생	제8조(관광 여건의 조성) ① (현
략)	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정부는 장애인의 관광활동
	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
	하여 관련 시설 및 환경을 정
	비하고 「장애인차별금지 및
	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
	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
	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
	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을
	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
	<u>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</u>
	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관
	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

를 실시하여야 한다.